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변경결정

주관부서: 도시과 도시계획팀(☎2811)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함

□ 사업개요

- 범 위 : 관내 개발제한구역
- 사업기간 : 2017. 6. ~ 2019. 8.
- 사 업 비 : 1.26억 원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 투자	2019	2020이후	비 고
계	126	31	95	-	
균 비	126	31	95	-	

○ 주요내용

-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(단절토지, 경계선관통대지)
-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

□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

- 단절토지 : 도로(중로2류 15미터이상), 철도, 하천개수로(지방 하천 이상)로 인하여 단절된 3만㎡ 미만 토지 ※ 8m 이상 도로 검토 가능
- 경계선관통대지 :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의해 개발제한 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㎡ 미만의 소규모 토지

□ 추진상황

- 2017. 6. 29. : 용역 착수
- 2017. 7.~11. : 기초조사, 현황조사 및 분석
- 2017. 12. 1. : 용역 중지(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지침 미수립)
- 2018. 12. 3. :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

□ 향후계획

- 2019. 1. ~ : 도시관리계획(안) 작성 및 국토교통부 협의